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4.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의 육성(안 제3조)
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 체육진흥사업의 종류(안 제4조)
 -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 체육대회의 개최
 -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체육교류
 -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
 -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적 지원(안 제5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안 제6조)
-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 지급(안 제7조)
- 체육시설의 설치 등(안 제8조)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

3. 참고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종류)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체육대회의 개최
3.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5.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체육교류
6.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